

예 산 총 칙

2016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9,854,245	16,195,627
일반회계	533,895,629	16,016,869
특별회계	5,958,616	178,758
기타특별회계	5,958,616	178,758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590,607	107,718
주택사업특별회계	40,048	1,201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39,613	31,188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9,450	1,784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064,116	31,923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64,782	4,943

제 2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969,01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